선문대학교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3. 3.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목 차

Ι.	선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4
ш.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6
IV.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0
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1
VI.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3
VII.	부록	14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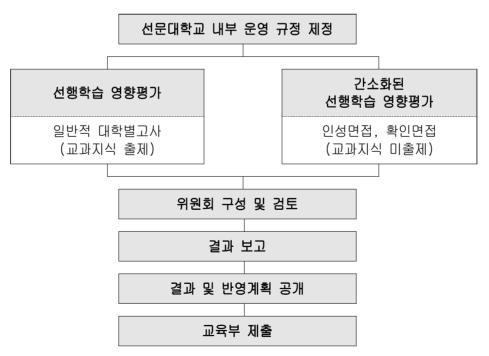
│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목적

-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후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나.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대입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의 요인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지 못하도록 함
- 다. 관련 법조항: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 [부록 1], [부록 2]

2. 선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가. 선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전체 프로세스



※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시행된 대학별고사는 『면접』이며, 교과지식을 출제하지 않고 인성면접, 서류 확인면접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소화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

나.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1) 구성 방향: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 … [부록 3]
 - 가) 입학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나) 입학처장, 입학관리팀장, 입학사정관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함
 - 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수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함
 - 라) 위원회의 구성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가) 위원 인적 구성: 위원장 포함 15명(내부 7명, 외부 8명)

나) 위촉 기간: 2023. 3. 1. ~ 2024. 2. 29.

3) 위원회 명단

연번	구분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1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처장	박○○	위원장, 당연직
2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팀장	전○○	위원, 당연직
3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과장	박○○	위원
4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계장	태〇〇	위원
5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주임	신○○	위원
6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주임	정○○	위원
7	내부	선문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주임	송00	위원
8	외부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	하○○	위원
9	외부	아산고등학교	교사	정○○	위원
10	외부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	조〇〇	위원
11	외부	온양고등학교	교사	안○○	위원
12	외부	천안불당고등학교	교사	임○○	위원
13	외부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사	MOO	위원
14	외부	온양용화고등학교	교사	0100	위원
15	외부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	박○○	위원

다.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회의

1) 일시: 2023. 3. 24.(금) 16:40~18:40

2) 장소: Z00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

3) 참석자: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 15명 참석

※ 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0명

4) 내용: 2023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서류를 검토해 의견 제시함.

5) 기타: 위원별 검토 의견서 작성 후 제출

6) 세부 일정

시간	일정	비고
16:30~16:40	참석자의 ZOOM 접속 확인	-
16:40~16:45	인사말	입학처장
16:45~17:40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현황 발표	박건영 과장
17:40~18:40	토론 및 검토의견서 작성	_
18:30~	선문대학교 대입전형 발전방안 추가 논의	-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문항

1. 2023학년도 입학전형

가. 수시 모집

 Π

전형유형	구분	전형명	전형방법	모집인원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¹⁾		929																
	정원 내	학생부교과(지역학생전형)		233																
학생부	경건 내	학생부교과(사회통합전형) ²⁾		64																
교과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학생부(교과)100%	46																
	저이 이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82																
	정원 외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30																
				학생부종합(서류전형)	서류 100%	294														
=1 /11 🖵	저이 내	학생부종합(면접전형)	[1단계] 4배수 선발	163																
학생부 종합	경전 내	경전 내	경전 내	경면 내	경전 내	경건 내	싱권 내	정원 내	싱건 내	싱컨 내	경면 내	강전 내	6년 네	O 년 네	6년 네	6년 UI	6년 대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전형)	서류 100%	33
0 🖽		학생부종합(외국인전형)	[2단계]	71																
	정원 외	학생부종합(장애인등대상자전형)	서류 70% + 면접30%	10																
실기/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학생부(교과)20% + 실기80%	165																
실적 위주	정원 내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교과)5% +학생부(출결)5% + 실기50% + 경기실적 40%	10																

- 1)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중 신학과(종교계열 학과) 27명만 면접(30% 반영) 실시
- 2) 학생부교과(사회통합전형) 중 신학과(종교계열 학과) 3명만 면접(30% 반영)실시

나. 정시 모집

전형유형	구분	전형명	전형방법	모집인원
人上		수능(일반학생전형) 나군		32
수능 위주	정원 내	수능(일반학생전형) 다군	수능 100%	16
귀수		수능(지역저소득층전형) 나군		2
실기/실적 위주	정원 내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다군	수능 20% + 실기 80%	10

다. 선문대학교 대학별고사

- 1) 면접: 교과지식을 묻지 않는 인성면접, 서류 확인면접 형태로 운영
- 2) 실기: 예체능 실기고사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제3호의 적용 배제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입학						계열	및	교과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문양	하위	인	문사	회			과	학			
평가대상		계열 기 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ᆕᆝᄄᆼᆼ	국어	사회	도덕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교과 I타 외
논술 등 필답고사	-	_	_	_	_	-	_	_	-	_	_	-	-	_	_
구술고사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신학과] 학생부교과(사회통합전형) [신학과] 학생부종합(면접전형)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전형) 학생부종합(외국인전형) 학생부종합(외국인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등대상자 전형)	전체 계열	-	_	_	_	_	_	_	_	_	_	_	_	0
선다형 고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대입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 전형은 총괄표와 같이 6개 전형임

Ⅲ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0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0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 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0				
	3. 선행학습 영향평가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0				
	위원회 구성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0				

※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는 모두 이행되었음(③번 항목은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으로 표시)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가. 선문대학교 자체 규정 운영: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규정』
- 나. 자체 규정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부록 3]

3.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가. 외부위원 구성 비율
 - 1) 외부위원 비율

연번	구분	인원	비율
1	내부위원	7명	46.7%
2	외부위원	8명	53.3%
	계	15명	100.0%

2) 외부위원 구성

구분	인원	비율
현직 고등학교 교사	8명	100%

3) 외부위원 소속기관 유형

연번	지역	고교유형	설립 구분	소속
1	충남 천안	일반고	공립	천안오성고등학교
2	충남 아산	일반고	사립	아산고등학교
3	충남 천안	일반고	공립	천안두정고등학교
4	충남 아산	일반고	공립	온양고등학교
5	충남 천안	일반고	공립	천안불당고등학교
6	충남 천안	일반고	공립	천안청수고등학교
7	충남 아산	일반고	공립	온양용화고등학교
8	충남 천안	일반고	공립	천안쌍용고등학교

나. 외부위원 구성의 적절성

- 1)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정하였음
- 2) 고등학교 교사는 일반고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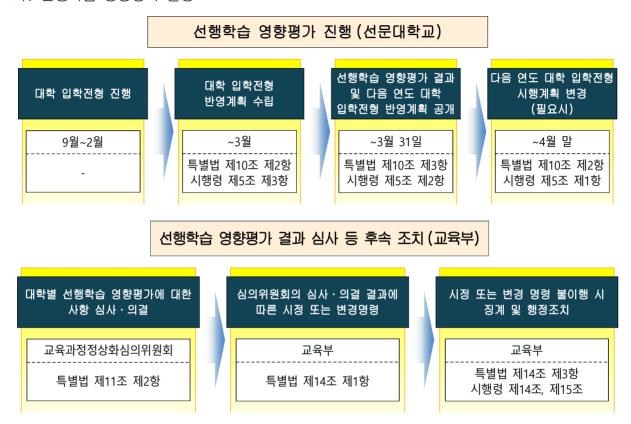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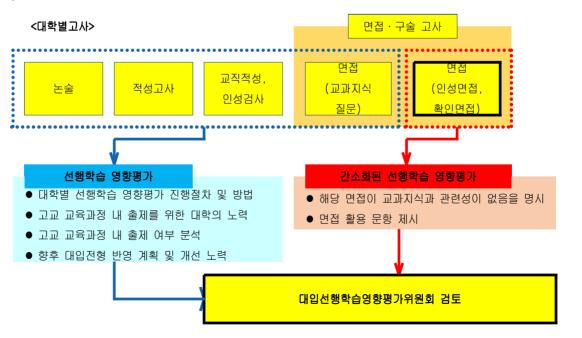
-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4.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반 절차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반 절차
 - (가) 선문대학교는 교과지식과 관련 있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 (나) 선문대학교의 면접은 교과지식과 관련성이 없으며, 면접 활용 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다) 선문대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간소화된 선행학습 영향평가』로 진행하며, 대입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교과지식과 관련성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Ⅳ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출제 전: 해당사항 없음

2. 출제 과정: 해당사항 없음

3. 출제 후: 해당사항 없음

4.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해당사항 없음

Ⅴ│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2023학년도 면접평가 운영 방법

평가영역	평가	평가방법	
인성	✓ 협업 능력(팀워크)✓ 나눔과 배려✓ 의사소통능력	✓ 도덕성 ✓ 성실성	다대일(평가자 2인:
전공 적합성	✓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탐구활동✓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기타 전공 관련 핵심 역량	지원자 1인)면접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발전 가능성	✓ 자기주도성 (성취지향성/적극성)✓ 경험의 다양성	✓ 리더십✓ 논리적·합리적 사고역량	평가(7등급 평가)

[※] 면접평가 10일 전 홈페이지에 평가영역별 면접 예상 질문(교과지식을 묻는 질문은 아님) 3문항씩 공개

2. 2023학년도 면접평가 활용 질문 (홈페이지 공개 자료)

평가역량	예상 질문
인성	 ○ 지원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좋은 습관'한 가지를 말해보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자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해 보기 바랍니다.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을 위해 지원자가 해왔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말해 보기 바랍니다. ○ 아무런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기 바랍니다.
전공 적합성	 ○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희망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1권을 소개하고, 느낀 점을 말해 보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 보기 바랍니다.
발전 가능성	 ○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말해 보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선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기 바랍니다. ○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인지 말해보고, 이 롤 모델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말해 보기 바랍니다.

[※] 면접은 제출서류 확인 및 출제문항을 토대로 10분 내외로 진행

3.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가. 선택형 검토 의견 결과

2023학년도 선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매우 부정	다소 부정	보통	다소 긍정	매우 긍정
면접평가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 되지 않도 록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	_	_	_	15
면접에 활용한 질문 예시에는 교과지식을 묻는 질 문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	_	_	_	15
면접평가는 고등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_	_	_	1	14

나. 기술형 검토 의견 결과

- 1)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의 수준을 생각한 적절한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진학 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 2) 선문대학교 면접문항은 교과지식이 아닌 인성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또한 면접 문항을 사전에 공개함. 따라서 면접전형의 선행학습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3) 선문대학교 대입전형(면접고사)과 관련하여 교과지식을 묻는 질의응답 및 사전예시 질문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
- 4) 선문대의 현재 면접고사의 면접 문항은 TF형태로 임시 교수단을 꾸려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공정한 문항을 도출하고 있음.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교과 지식을 묻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여 운영 중
- 5) 현재의 평가 기준과 시행 방법에 있어서 절차나 내용에 문제없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응시생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 있음.
- 6) 학생부종합(면접) 전형의 면접을 통한 학생 선발 방식은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전혀 유발하지 않음. 따라서 선문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면접형)은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고 지나친 경쟁 또한 유발하지 않음. 선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선행학습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확신함.
- 7) 면접고사 9문항 모두 교과지식을 묻는 질문은 아니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음. 인성관련 질문에 있어서 나눔과 배려 외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 8) 면접고사가 교과적 지식을 점차 벗어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 학생의 내면과 인성, 그리고 꿈에 대한 도전 등 반영 요청.

Ⅵ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가. 선문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운영할 계획임.

2. 2024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계획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정원 구분	전형명	전형방법		
수시 호		정원 내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¹⁾			
			학생부교과(지역학생전형)			
	학생부		학생부교과(사회통합전형)	학생부교과 100%		
	교과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²⁾	역경구포포 100%		
		정원 외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정원 내	학생부종합(서류전형)	서류 100%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외국인전형) ³⁾	∧1 		
			학생부종합(면접전형)	[1단계] 4배수 선발 서류 100%		
		정원 외	학생부종합(장애인등대상자전형)	[2단계] 서류 70% + 면접 30%		
	실기/ 실적 위주	!적 정원 내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학생부(교과)20%		
			실기/실적(기회균형전형)	+ 실기80%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교과)5% + 학생부(출결) 5% + 실기50% + 경기실적 40%		
정시 실기, 실적	۸ ـ		수능(일반학생전형) 나군			
	수능 위주	- 정원 내	수능(일반학생전형) 다군	수능 100%		
			수능(지역저소득층전형) 나군			
	실기/ 실적 위주	OC 41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다군	수능 20% + 실기 80%		

- 1)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중 신학과(종교계열 학과) 19명만 면접(30% 반영) 실시
- 2) 학생부교과(기회균형전형) 중 신학과(종교계열 학과) 1명만 면접(30% 반영) 실시
- 3) 학생부종합(외국인전형) 중 신학과(종교계열 학과) 10명만 면접(30% 반영) 실시

VII	부	록
-----	---	---

[부록	1]	공교육정상화법		••••••		••••••	• • • • • • • • •	••••••••••••	15
[부록	2]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	•••••		20
「브론	31	서무대하고 대회	· 이하저혀이	서해하스	역향평가	우역	규정		24

[부록 1]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7. 20.>

-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하다.
 - 가. 국가교육과정:「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다. 학교교육과정:「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 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0. 20.>
 -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초・중등교육법」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 3,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 3. 각종 자격증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고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 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육공무원법」제50조 또는「사립학교 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 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

-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2.「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식 < 법률 제12395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14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3. 26.>

부 **칙** <법률 제14392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초・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 ③부터 ③까지 생략

[부록 2]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 (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 12. 3.>

- 1.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 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5.>

-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하여 평가하는 행위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 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

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 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 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 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 나. 국립대학법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3조(보고·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교육공무원법」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 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591호(2014. 9. 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부 칙 <대통령령 제25591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77호, 2016.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224호, 2019. 12. 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집학교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집학교등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밀집학교등으로 본다.

[부록 3] 선문대학교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규정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규정

제정 2020.6.25. 주무부서: 입학관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하여 선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 요소를 배제하여,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범위와 수준에서 입학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란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고교 교육과정이 그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운영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유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입학처장, 입학관리팀장, 입학사정관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입학사정관,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
- 1.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입학전형 운영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2. 입학전형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절차
- 3.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의 분석과 평가의 내용
- 4. 평가 결과의 공개와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영향평가

제8조(평가 시기)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별 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매년 실시한다.

제9조(평가 방법 및 절차) ① 본교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제외)를 대상으로 자체 계획 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제10조(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공개) 영향평가의 결과와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해당 내용을 작성한 경우만) 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